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4권
2007년 5월 pp. 27~52

논문 접수일 2007.04.30
논문 심사일 2007.05.01
심사 완료일 2007.05.06

CISG 第39條 第1項의 ‘合理的 期間’에 관한 研究

허 광 육*

-
- I. 서론
 - II. CISG 제39조(1)항의 개관 및 합리성
 - III. CISG 제39조(1)항의 ‘합리적 기간’의 해석
 - IV. 결론
-

I. 序 論

CISG 제7조 제1항¹⁾은 본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과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통일성을 증진할 필요성”(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및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ISG의 적용 및 해석상의 통일성은 CISG가 모든 관련 법원 및 중재판정부에 관념적으로(ideally)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CISG의 적용상 통일성을 증진시키

* 영산대학교 무역물류학과 전임강사

1) Art. 7(1) CISG;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기 위해서는 CISG를 적용하는 실무자들(practitioner)이 여타 체약국 및 CISG 제1조 제1항 b호를 통하여 CISG를 적용하는 여타 국가들의 관례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 또한 실무자들이 모든 용어들을 공통적이고 동일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용어가 통일법(uniform law)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의 선택이 국경을 초월하여서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CISG를 적용한 사건에 대한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통일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통일법의 제정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³⁾.

이러한 협약의 해석원칙을 기준으로 CISG 제39조 제1항을 해석할 때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실무 당사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합리적인 기간’이다. 왜냐하면 첫째, ‘합리적인 기간’이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는 협약 상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합리적’(reasonable)이란 용어의 언어적 정의는 기대와 관용(expectations and toleration)에 근거한 단어이기 때문에, 주로 주관적인 용어(subjectively terms)이다⁴⁾. 하지만 이 용어는 많은 다양한 실무자들(practitioners)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객관성이 요구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특히 ‘합리적’이란 용어가 CISG와 관련된 경우, 그 용어의 객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CISG는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실행되어야만 하는 통일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CISG 제39조(1)에서 나타나고 있는 ‘합리적 기간’(reasonable time)이란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실무자들이 ‘합리적 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CISG 제39조(1)항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둘째, ‘합리적 기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 ‘합리적 기간’을 적용한 판례⁵⁾를 검토하며, 넷째, 합리적

- 2) Camila Baasch Andersen, "Reasonable Time in Article 39(1) of the CISG - Is Article 39(1) Truly a Uniform Provision?", Pace ed., Review of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1998, Kluwer Law International(1999), p. 64.
- 3) Ferrara, "Uniform Application and Interest Rates under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24 Ga. J. Int'l & Comp. Law 467; Banca &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4) Camila Baasch Andersen, op.cit., pp. 68-69.

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第39條 第1項의 概觀 및 合理性

1. 제39조 제1항의 주요내용

CISG 제39조는 ULIS(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제39조⁶⁾를 이어 받은 것이다.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의무는 ULIS에 이어서 CISG에서도 그래도 유지되었지만, ULIS 제39조와 비교하여 중요한 변경 사항은 UNCITRAL의 논의과정에서 부적합의 “즉시”(prompt)통지라는 요건이 “합리적인 기간 내”(within a reasonable time)의 통지라는 요건으로 변경되었다⁷⁾. 이것은 매수인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며⁸⁾, 관습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ULIS 제39조(1)의 두 번째 문장이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⁹⁾.

5) 판례는 인터넷으로 입수 가능한 CLOUD에 나타난 판례를 주로 분석하였다.

6) Art. 39, ULIS; 1. The buyer shall lose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has not given the seller notice thereof promptly after he discovered the lack of conformity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If a defect which could not have been revealed by the examination of the goods provided for in Article 38 is found later, the buyer may nonetheless rely on that defect, provided that he gives the seller notice thereof promptly after its discovery. In any event, the buyer shall lose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has not given notice thereof to the seller within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oods were handed over, unless the lack of conformity constituted a breach of a guarantee covering a longer period.

2. In giving notice to the seller of any lack of conformity, the buyer shall specify its nature and invite the seller to examine the goods or to cause them to be examined by his agent.

3. Where any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has been sent by letter, telegram or other appropriate means, the fact that such notice is delayed or fails to arrive at its destination shall not deprive the buyer of the right to rely thereon.

7) UNCITRAL Year Book III(1972), p. 87, No. 74 이하 참조; UNCITRAL Year Book IV(1973), p. 48, No. 85.

8) Peter Schlechtriem, Uniform Sales Law, Manz(Vienna), 1986, p. 69.

CISG 제39조 제1항은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였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내용을 명세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¹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먼저 적합성의 개념은 CISG 제35조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품질, 수량 및 명세와 관련되며¹¹⁾, 제3자의 권리 및 클레임의 통지는 제43조에서 독립적으로 다루어진다. 둘째, 제39조의 부적합 통지를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the great majority of decisions)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물품의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클레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 부적합 통지는 제35조에 의해 부과된 품질의무의 위반뿐만 아니라 제35조의 감퇴의 결과로 형성된 계약적 보증의 위반(a breach of a contractual warranty made in derogation of article 35)에도 적용 된다¹²⁾. 셋째, 제39조 제1항은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여야(has discovered)하는 때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발견하였어야만 하는(ought to have discovered) 때를 규정하고 있다. 넷째, 만약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물품의 부적합을 원용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매수인의 부적합 통

9) UNCITRAL Year Book VII(1976), p. 110 이하 참조.

10) Art. 39, CISG(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11)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 278.

12) CLOUT case No. 237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Award of 5 June 1998(<http://ciscgw3.law.pace.edu/cases/980605s5.html>)].(본 사건은 미국의 제조업자가 중국의 벤처기업에 프레스(press)를 판매하기로 한 계약이다. 본 계약에서 미국의 제조업자는 일류급 기량(first class workmanship)으로 최고의 자재(the best materials)를 사용하여 프레스를 제작한다고 보증하였지만, 프레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공한 디자인 도면에서 설명한 lockplate를 다른 lockplate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또한 정확하게(properly) lockplate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는 매도인이 프레스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인도된 프레스가 CISG 제35(2)항에 따라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이었으며, 대체된 lockplate가 부정확하게 설치될 경우 파손될 수 있음을 매도인이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계약에 명시적 보증(express guarantee)을 단순히 포함하는 것은 CISG 제35(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did not exclude).

지의무 위반으로 상실하는 권리((i) 손해배상청구권(제45조(1)(b)), (ii) 대체품인도청구권(제46(2)), (iii) 하자보완청구권(제46(3)), (iv) 부가기간 설정권(제47조), (v) 계약해제권(제49조), (vi) 대금감액청구권(제50조)이다¹³⁾. 그러므로 물품의 부적합 통지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합리성의 의미

1) CISG에 있어서 합리성(reasonableness)

CISG 제39조 제1항의 '합리적'(reasonable)이란 단어는 주관적(subjectivity)인 용어이므로, '합리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합리적'이란 용어는 類型異義語(faux amis)의 문제를 회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을 발휘하지만,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없이 그 자체로(its own)만 남겨진다면 너무 부정확하여서 통일성(uniformity)을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reasonable)이란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CISG의 규정은 다수가 있다¹⁵⁾. CISG상에서 합리성(reasonableness)이란 용어가 이렇게 빈번히 사용되는 것(popularity)은, 서로 다른 법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이 초국가적 무역법(in transnational trade law)인 CISG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일한 기초(equal ground)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양 법계간의 타협점(compromise)을 의미한다¹⁶⁾. 합리성, 공정성(fairness) 및 정당성(justice)의 개념들은 모든 법률 시스템의

13) Fritz Enderlein & Dietrich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Publication, 1992, p. 150.

14) Camila Baasch Andersen, op.cit., pp. 70-71.

15) CISG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제16조 제2항 b호, 제18조 제2항, 제25조, 제33조 c호, 제34조, 제35조 제2항 c호,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46조 제3항,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2항 a호, 제49조 제2항 b호, 제60조 a호,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제72조 제2항, 제73조 제2항, 제75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79조 제1항, 제79조 제4항, 제85조, 제86조 제1항, 제86조 제2항, 제87조, 제88조 제1항, 제88조 제2항, 제88조 제3항.

16) Camila Baasch Andersen, op.cit., pp. 71-72.

초석들이며, ‘합리적’이란 용어는 유연성과 정당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표(representative)들이 쉽게 합리적‘이란 용어를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합리성(reasonableness)은 협약이 근거하는 일반원칙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협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CISG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문제로서 CISG에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에 합리성이 적용된다¹⁷⁾.

2) CISG에 있어 합리성의 유연성과 관련한 문제점

‘합리성’이란 용어는 유연성의 정도가 높은 개념이다. 즉 이 용어는 매우 주관적이고 광의의 개념으로서 주변의 모든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용어이다. CISG에서 ‘합리성’과 같은 유연성이 높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CISG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CISG 초안자들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각 사건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존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¹⁸⁾. 그러나 협약의 통일성이 이러한 유연성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것은 CISG초안자들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다¹⁹⁾.

비록 유연성이 입법과 실행(legislation and practice) 상의 공정성(fairness)과 관련하여 필요한 선행조건(prerequisite)일지라도, 그 용어들이 매우 정확하고, 임의의 결과를 초래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높은 모든 용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은 있어야만 한다. 몇몇 규정들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협약 속에 내재되어 있다²⁰⁾. 그러

17) Kitzter,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4, p. 116.

18) ‘합리적인 기간’과 관련하여 UN Doc. A/CN.9/WG.2/WP.16, para. 85를 참고하라. 작업반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라는 표현은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19) CISG를 초안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표는, 통일법이 당사자들의 상업적 및 민사적 성격(the commercial or civil character of the parties)에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 혹은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걱정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합리적인 기간’의 정의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UN Doc. A/CN.9/52, para. 94).

20) 예를 들어, 제8조(2)항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권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특정한 합리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제8조(3)항에 열거되어 있다. 비록 다소 불명확하고 일반적일지라도, 이러한 기준들은, 제8조(2)항의 영향을 받는 조항들이 ‘합리

한 협약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 혹은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불명확한 경우, 관련 종사자들, 학자들과 법률가들이 개입하여야 한다. CISG 제7조 제1항은 협약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성격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란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각 조항은 관념적으로(ideally) 합리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만 한다²¹⁾. 이들 ‘합리적’이란 용어가 포함된 규정들에 대한 최 근의 모든 사법적 및 중재상(judicial and arbitral)의 정의들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이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고, 용어의 해석에 대한 패턴을 확립하고 있다²²⁾.

III. 第39條 第1項의 ‘合理的 期間’의 解釋

1. ‘합리적 기간’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

1) 외국학자들의 해석

CISG 제39조 제1항은 ‘부적합을 명세한 통지는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 했거나 발견하였어야 하는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두 기간, 즉 물품검사 기간과 부적합 통지기간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 기간들(these periods)은 전체 기간(total period)에는 산입되지 아니 한다²³⁾.

성’이란 용어의 예정된 유연성(intended flexibility)을 보유하는 동안만큼은 통일성을 가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증해 준다.

- 21) Bianca &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ARA, MILAN, 1987, p. 74; 협약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한다는 것은 협약의 용어들과 개념들을 자율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그 용어에 전통적으로 부여된 의미를 참고하지 않고 협약 자체의 맥락에서 자율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 22) Camila Baasch Andersen, op. cit., pp. 63-176.
- 23) Peter Schlechtrie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466.

Schlechtreim 교수는 “부적합 통지를 즉시(promptly) 행할 것을 요구하는 ULIS 제39조 제1항과는 대조적으로, CISG에서는 통지를 행하여야 할 기간이 상당히 유연하다. ULIS의 ‘즉시’라는 요건(requirement for promptness)과 독일 및 오스트리아 법(§ 377(1) HGB)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당한 지체 없이’의 개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²⁴⁾. 그러므로 각 국가들이 ULIS 제39조에 대한 판례를 채용함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²⁵⁾”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합리적 기간’을 결정함에는 모든 무역관습(trade usages) 및 당사자 간의 무역관행(practices)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건의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⁶⁾.

한편 Honnold 교수는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했어야 할 시점 이후의 통지에 관한 한, 그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신속한 통지가 요구되는지 여하를 판단함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물품의 변질 가능성, 공정한 견본 채취 또는 검사의 필요성, 매도인에 의한 치유의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⁷⁾.

Enderlein & Maskow 교수는, “ULIS 제39조 제1항의 경우처럼 합리적인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기간(short period)’을 의미한다. 그러한 기간은 제39조 제2항의 절대적인 기간과는 달리 상대적인 기간(relative time)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부적합을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매수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며, 매도인이 부적합에 대하여 알기 이전에는 부적합을 치유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부적합이 치유될 수 없는 경우에, 즉 부패성 물품과 같은 경우,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성(for speed)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 ‘합리적’이란 말은 ‘즉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⁸⁾.

그리고 Rohwer & Coe²⁹⁾는 합리적인 기간의 경과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24) Peter Schlechtriem, *ibid.*, p. 466.

25) Peter Schlechtriem, *ibid.*, p. 466.

26) Peter Schlechtriem, *ibid.*, p. 467.

27) John O. Honnold, *op.cit.*, p. 280.

28) Fritz Enderlein & Dietrich Maskow, *International Sale Law*, Oceana Publications, 1992, p. 159.

29) Campbell & Rohwer eds., “The 1980 Vienna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 UCC – Peaceful Coexistence ?”, *Legal Aspects of*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은 (1) 하자발견의 어려움 - 하자의 성질, 물품의 복잡성, 매수인의 전문성(sophistication) 등에 영향을 받는다, (2) 계약의 조건, (3) 물품의 상대적 부패성(perishability), (4) 이행기(date)까지의 이행의 과정, (5) 무역관행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Maurer 교수는, “제39조 하에서 법원이 판정을 내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부적합을 통지하였느냐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채용한 상업적 표준(commercial standard)이 될 것”³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Sono 교수는, “합리적인 기간은 매수인이 실제로(actually)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혹은 ‘발견하였어야만 했던’(ought to have discovered) 시간부터 계산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어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매수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³¹⁾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제39조(1)항의 입법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기간”은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³²⁾, ‘합리적 기간’의 길이도 분명히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³³⁾.

2) 국내학자들의 견해

(1) 국내 무역학자들의 견해

‘합리적 기간’과 관련하여 국내 학자들은 외국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하여 비슷한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다. 오원석 교수는 Honnold 교수의 견해를 수용하여 “‘합리적 기간’을 결정함에는 광범위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통지의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Elsevier; North Holland) 1984, pp. 272-273.

- 30) Maur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5 *Syr.J.Int'l L. & Com.* 379, 1989, n. 99.
- 31) C.M. Bianca & M.J.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E·MILAN, 1987, pp. 309-310.
- 32) UNCITRAL Year Book III(1972), p. 87, paras. 76-78; John O. Honnold, *Documentary History of the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Deventer/Netherland, Kluwer, 1989(이하 DOC'Y HIST라 함), p. 104.
- 33) UNCITRAL Yearbook VIII(1977), p. 39, para. 202; Honnold, DOC'Y HIST., p. 332.

신속성을 고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에는 물품의 변질가능성, 견본채취의 공평성 또는 검사의 필요성 및 매도인에 의한 보완의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³⁴⁾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진 교수³⁵⁾는 합리적인 기간의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기간은 각 경우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서정두 교수는 ‘reasonable time’을 상당한 기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라 함은 거래의 내용과 물품의 성질, 거래의 관행, 검사의 장소·시설·능력, 검사의 기간, 광범위한 표본조사, 실험 및 매도인의 수리 청구권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³⁶⁾라고 설명하고 있다.

(2) 국내 법학자들의 견해

국내법학자들의 견해들을 고찰해 보면, 먼저 이기수·신창섭 교수는 “합리적 기간은 개별거래 내용과 목적물의 성질, 거래관행, 시설, 능력,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주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³⁷⁾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김인제·서경무 교수는 “‘합리적 기간’이란 미국통일상법 전 제2-607조 제3항 제a호³⁸⁾와 같은 의미로서, 수입상이 계약목적물을 검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회를 확보한 시기부터 기산하여 실현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³⁹⁾고 설명하고 있다. 최홍섭 교수는 “합리적 기간은 상당히 짧게 해석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⁴⁰⁾고 설명하고 있다. 고범준 교수⁴¹⁾는 “물품검사의 결과로 발견한 하자에 대한 통지도

34) 오원석·하강현,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2004, p. 144; 양영환·오원석, 「최신무역 상무론」, 법문사, 2003, p. 367.

35)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00, p. 351.

36)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2001, p. 725.

37) 이기수·신창섭,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2001, p. 62.

38) § 2-607(3)(a), UCC; (3) If a tender has been accepted: (a) the buyer must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buyer discovers or should have discovered any breach notify the seller, but failure to give timely notice bars the buyer from a remedy only to the extent that the seller is prejudiced by the failure; and

39) 김인제·서경무, 「국제거래법요론」, 두남, 2000, p. 364.

40) 최홍섭, 「유엔국제매매법」,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7, p. 61.

41) 고범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대한상사중재원, 1983, p. 44.

‘지체 없이’ 하지 않으면 후일 이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지체 없이’ 부적합 통지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⁴²⁾는 ”합리적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태희 변호사는 “합리적 기간은 개별거래내용과 목적물의 성질, 거래관행, 시설, 능력,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주위사정 등을 광범위한 조사, 실험 및 매도인의 보수청구권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⁴³⁾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서현제 교수는 reasonable time을 ‘상당한 기간’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란 매수인이 당해물을 검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확보한 시기부터 기산하여 실현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을 말한다.”⁴⁴⁾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김동석 교수는 “물품의 검사도 하자의 통지도 모두 상당한 기간 내(우리 상법상의 ‘지체 없이’)에 하지 아니하면 후일 하자로 인한 claim을 제기할 수 없다”⁴⁵⁾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 판례상의 ‘합리적 기간’

1) 지연된 통지라고 본 판례

부적합에 대한 통지를 하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제39조 제1항에 따른 시기적절한 통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그는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 상실 한다⁴⁶⁾. 심지어 매수인이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많은 사례에서 그 통

42)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2005, p. 100.

43) 이태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당사자의 의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임홍근·이태희 공편, 삼지원, 1991, p. 134.

44) 서현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0, p. 201.

45) 김동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하자담보책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임홍근·이태희 공편, 삼지원, 1991, p. 226.

46) CLOUD case No. 219 [SWITZERLAND *Tribunal* [Appellate Court] Valais 28 October 1997].(매수인이 지연인도와 물품의 부적합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자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

지가 너무 지연된 것으로 판결되었다.

물품이 인도된 날로부터 산정하여, 다음의 시간에 발송된 통지는 특별한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시기부적절한 통지였음이 판명되었다: 24개월⁴⁷⁾; 1년⁴⁸⁾; 9개월⁴⁹⁾; 7~8개월⁵⁰⁾; 4개월⁵¹⁾; 3개월 15일⁵²⁾; 3개월⁵³⁾; 2개월 15일 이상⁵⁴⁾; 2개월⁵⁵⁾; 첫 번째 인도의 경우에 2개월만의 통지와 다음번 인도의 경

시하였다) CLOUD case No. 341 [CANADA *La San Giuseppe v. Forti Moulding Ltd.*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31 August 1999](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과 과다선적(over-shipment)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물품의 부적합과 관련하여, 법원은, CISG 제39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기적절한 통지를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의 주장을 가각하였다. 또한 매수인이 부적합과 관련한 어떠한 명세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 47)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Düsseldorf 23 June 1994].(본 사건은 16개월에 걸쳐 인도된 두 개의 수압식 프레스 엔진과 관련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문제가 된 프레스 엔진의 부적합이 좀 더 일찍 발견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24개월 만에 발송된 통지는 지연된 통지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엔진의 문제점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자 발견을 위하여 장기의 시간을 허용하였을지라도 검사기간이 너무 장기간이었고, 통지는 양 엔진과 관련하여 적시에 발송되지 못하였다) 판시하였다).
- 48) CLOUD case No. 262 [SWITZERLAND *Gerichtskommission Oberrheintal Kanton St. Gallen* 30 June 1995];(본 사건은 오스트리아 매도인과 스위스 매수인 간의 사건으로, 물품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하자 매도인이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부적합통지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법원은 “첫 번째 검사 시점에 작업이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인도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의 사소한 개선작업은 CISG 제58(1)항의 의미에서 인도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 후 1년 만에 이루어진 부적합통지는 명백히 너무 지연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CLOUD case No. 263 [SWITZERLAND *Bezirksgericht* [District Court] Unterrheintal 16 September 1998](물품의 인도 후 1년 만에 발송된 부적합 통지가 너무 지연된 통지라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 49) [BELGIUM Tribunal commercial [District Court] Bruxelles 5 October 1994 <<http://cisgw3.law.pace.edu/cases/941005b1.html>>].
- 50) CLOUD case No. 256 [SWITZERLAND *Tribunal cantonal* [Appellate Court] Valais 29 June 1998].
- 51) CLOUD case No. 232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München 11 March 1998]; CLOUD case No. 378 [ITALY *Tribunale* [District Court] Vigevano 12 July 2000].
- 52) CLOUD case No. 192 SWITZERLAND *Obergericht* [Appellate Court] Luzern 8 January 1997;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Berlin 16 September 1992].
- 53) [NETHERLANDS *Gerechtshof* [Appellate Court] Arnhem 17 June 1997 <<http://cisgw3.law.pace.edu/cases/970617n1.html>>]; [BELGIUM *Rechtbank* [District Court] Kortrijk 27 June 1997<<http://cisgw3.law.pace.edu/cases/970627b1.html>>]; CLOUD case No. 167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München 8 February 1995].
- 54) CLOUD case No. 292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Saarbrücken 13 January 1993].

우에 대략 7주 정도만의 통지⁵⁶⁾; 6주⁵⁷⁾; 1개월⁵⁸⁾; 25일⁵⁹⁾; 24일⁶⁰⁾; 23일⁶¹⁾; 21일⁶²⁾; 20일⁶³⁾; 19일⁶⁴⁾; 16일⁶⁵⁾; 거의 2주⁶⁶⁾; 인도일 이후의 모든 시기(부패 가능성이 있는 화훼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⁶⁷⁾ 등이다.

또한 매수인이 부적합을 알았거나 혹은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시기에 발송된 통지는 특정한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너무 지연된 통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7개월⁶⁸⁾; 거의 4개월⁶⁹⁾; 2개월 이상⁷⁰⁾; 6주⁷¹⁾; 32

- 55) [BELGIUM Rechtbank [District Court] Kortrijk 16 December 1996 <<http://cisgw3.law.pace.edu/cases/961216b1.html>>]; CLOUD case No. 81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Düsseldorf 10 February 1994].
- 56) [AUSTRIA Oberster Gerichtshof [Supreme Court] 27 August 1999 <<http://cisgw3.law.pace.edu/cases/990827a3.html>>].
- 57) [GERMANY Amtsgericht [Lower Court] Kehl 6 October 1995 <<http://cisgw3.law.pace.edu/cases/951006g1.html>>].
- 58)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Mönchengladbach 22 May 1992 <<http://cisgw3.law.pace.edu/cases/920522g1.html>>].
- 59) CLOUD case No. 359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Koblenz 18 November 1999]; CLOUD case No. 310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Düsseldorf 12 March 1993].
- 60) CLOUD case No. 230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Karlsruhe 25 June 1997].
- 61) [ITALY Tribunale [District Court] Cuneo 31 January 1996 <<http://cisgw3.law.pace.edu/cases/960131i3.html>>].
- 62) CLOUD case No. 285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Koblenz 11 September 1998];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Köln 11 November 1993 <<http://cisgw3.law.pace.edu/cases/931111g1.html>>], CLOUD case No. 122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Köln 26 August 1994].
- 63) [GERMANY Amtsgericht [Lower Court] Riedlingen 21 October 1994 <<http://cisgw3.law.pace.edu/cases/941021g1.html>>];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Berlin 16 September 1992 <<http://cisgw3.law.pace.edu/cases/920916g1.html>>].
- 64)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Landshut 5 April 1995 <<http://cisgw3.law.pace.edu/cases/950405g1.html>>].
- 65) CLOUD case No. 4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Stuttgart 31 August 1989].
- 66) CLOUD case No. 284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Köln 21 August 1997].
- 67) CLOUD case No. 290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Saarbrücken 3 June 1998].
- 68) [ITALY Pretura [District Court] Torino 30 January 1997 <<http://cisgw3.law.pace.edu/cases/970130i3.html>>].
- 69) [NETHERLANDS Hoge Raad [Supreme Court] 20 February 1998 <<http://cisgw3.law.pace.edu/cases/980220n1.html>>].
- 70)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Berlin 16 September 1992 <<http://cisgw3.law.pace.edu/cases/920916g1.html>>].

일⁷²⁾; 1개월(팩스로) 3주(전화로)⁷³⁾; 4주⁷⁴⁾; 3주⁷⁵⁾; 약 2주⁷⁶⁾; 7일⁷⁷⁾.

2) 합리적인 기간 내의 통지로 본 판례

특정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다음의 시기에 발송된 통지는 제3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된 것으로 판결되었다. 즉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된 후 1일⁷⁸⁾; 물품이 검사된 후 1일⁷⁹⁾; 인도 후 3일⁸⁰⁾; 매수인이 하자를 인지한 후 7일⁸¹⁾; 물품이 검사된 후 8일 내⁸²⁾; 전문가의 보고서가 발간된 후 8일⁸³⁾; 연속된 통지의 경우, 즉 물품에 대한 최초

-
- 71) CLOUD case No. 123 [GERMANY *Bundesgerichtshof* [Supreme Court] 8 March 1995].
 - 72) CLOUD case No 164 [HUNGARY *Budapest Arbitration Award* case No. Vb 94131 of 5 December 1995].
 - 73) [ICC Court of Arbitration case No. 8247 of June 1996 <<http://cisgw3.law.pace.edu/cases/968247i1.html>>].
 - 74) CLOUD case No. 280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Jena 26 May 1998]; CLOUD case No. 196 [SWITZERLAND *Handelsgericht* [Commercial Court] Zürich 26 April 1995].
 - 75) [NETHERLANDS *Gerechtshof* [Appellate Court] 's-Hertogenbosch 15 December 1997 <<http://cisgw3.law.pace.edu/cases/971215n1.html>>].
 - 76) CLOUD case No. 230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Karlsruhe 25 June 1997].
 - 77) CLOUD case No. 48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Düsseldorf 8 January 1993]; CLOUD case No. 210 [SPAIN *Audiencia Provincial* [Appellate Court] Barcelona 20 June 1997]; CLOUD case No. 339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Regensburg 24 September 1998]; CLOUD case No. 56 [SWITZERLAND *Pretore* [District Court] Canton of Ticino, Locarno Campagna 27 April 1992].
 - 78) CLOUD case No. 229 [GERMANY *Bundesgerichtshof* [Supreme Court] 4 December 1996].
 - 79) CLOUD case No. 46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Aachen 3 April 1990].
 - 80)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Bielefeld 18 January 1991 <<http://cisgw3.law.pace.edu/cases/910118g1.html>>].
 - 81) Helsinki Court of First Instance, Finland, 11 June 1995, and [FINLAND *Hovioikeus / Hovrätt* [Appellate Court] Helsinki 30 June 1998 <<http://cisgw3.law.pace.edu/cases/980630f5.html>>].
 - 82)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Köln, 22 February 1994(1992년 7월 8일 혹은 그 전에, 매수인은 자신이 현재 발견한 하자를 명세한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통지를 매도인에게 발송하였다. 물품의 검사 시기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매수인의 물품 검사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1992년 7월 4일 및 5일이 주말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CISG 제39(1)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의 가(假) 테스트(an initial provisional test) 후 2주 만에 첫 번의 통지 발송, 두 번째 테스트 후 1개월에 다른 통지 발송, 한 대의 기계의 인도 후 6 개월 및 또 다른 한 대의 기계의 인도 후 7개월에 마지막 통지 발송⁸⁴⁾; 인도 후 19일⁸⁵⁾; 물품의 검사 후 19~21일⁸⁶⁾; 매수인이 추정적으로 부적합에 대하여 인지하였어야 했던 때로부터 4주⁸⁷⁾; 인도 후 1개월 내⁸⁸⁾.

- 83) CLOUD case No. 45 [ICC Court of Arbitration, case No. 5713 of 1989](매도인과 매수인이 1979년에 3건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은 합의된 대로, 선적서류의 제시 시에 대금의 90%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계약의 물품은 계약명세와 일치하지 않았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물품을 더욱 잘 팔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매수인은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매도인은 각 계약 하에서 만기일이 남겨진 10%의 잔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면서 중재를 진행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클레임은 물품의 직접적 손실, 재정적 비용 및 상실된 이익, 이자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선적 전, 실행가능한 단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였고, 합리적인 기간 내(즉, 전문가의 검사보고서의 발간 이후 8일 만에)에 매도인에게 부적합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게다가 법원은 매도인은 CISG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알고 있었고 모를리 없었으며, 매수인에게 부적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 84) CLOUD case No. 225 [FRANCE Cour d'appel [Appellate Court] Versailles 29 January 1998](항소법원은 부적합에 대한 통지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을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in the case at hand), 매수인은 가 검사(provisional test)가 매수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진 후 2주일 만에 프랑스에 있는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매도인에게 발견된 부적합과 새로운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취해야 할 개선조치를 명세하여 통지하였다. 두 번째 검사 이후 1 개월 만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기계에 대한 확실한 수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기계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또 다른 서신을 발송하였다. 후에, 매수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기계를 검사한다는 매도인의 요청이 있자마자, 2대의 기계가 인도·설치되었다. 매수인은 첫 번째 기계의 인도 후 6개월 만에 하자를 명세한 추가 서신을 매도인에게 발송하였고, 두 번째 기계의 인도 후 11개월 만에 부적합 통지를 발송하였다. 법원은 모든 부적합 통지가 CISG 제39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시하였다.); [ITALY Tribunale [District Court] Busto Arsizio 13 December 2001 <<http://cisgw3.law.pace.edu/cases/011213i3.html>>] (합리적으로 기계의 설치 후 즉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매수인이 추가로 발견한 하자에 관하여는 연속적인 통지를 발송하였다.).
- 85)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Frankfurt 9 December 1992 <<http://cisgw3.law.pace.edu/cases/921209g1.html>>.
- 86) CLOUD case No. 315 [FRANCE Cour de Cassation [Supreme Court] 26 May 1999].
- 87) CLOUD case No. 319 [GERMANY Bundesgerichtshof [Supreme Court] 3 November 1999].
- 88) CLOUD case No. 202 [FRANCE Cour d'appel [Appellate Court] Grenoble 13 September 1995]. 다수의 다른 판례들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즉 “매수인의 통지를 시기적절하였다. 비록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한 정확한 기간은 명백하지 않을지라도 마찬가지이다.”; CLOUD case No. 98 [NETHERLANDS Rechtbank

3. 비교법적 검토

1) 우리 상법과의 비교

우리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즉시”라는 개념은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후, 촌각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엄격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⁸⁹⁾, 계약목적물을 검사할 때의 “지체 없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지체 없이”란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자연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⁹⁰⁾. 상법에서 이와 같은 특칙을 둔 이유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너무 오랫동안 매도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며, 매도인의 위험에서 매수인이 투기를 노릴 수 있는 반면에 매도인으로서는 공급선과의 교섭이나 전매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칙을 두어서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⁹¹⁾.

2) 미국통일상법전과의 비교

미국통일상법전 제2-607조 제3항(a)⁹²⁾는 “매수인은 위반을 발견했을 때 또는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위반을 매도인에게

[District Court] Roermond 19 December 1991];[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Paderborn 25 June 1996 <<http://cisgw3.law.pace.edu/cases/960625g1.html>>].

89) 서경무, 「무역계약론」, 홍익제, 1996, p. 228; 김동석, “상사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 224.

90)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0, p. 198.

91)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2, p. 270.

92) §2-607(3)(a), UCC; If a tender has been accepted: (a) the buyer must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buyer discovers or should have discovered any breach notify the seller, but failure to give timely notice bars the buyer from a remedy only to the extent that the seller is prejudiced by the failure; and

통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구제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지의 시기는 상인인 매수인(merchant buyer)에게 상업적 표준(commercial standards)을 적용시킴으로써 결정되어 진다. 소매 고객(retail consumer)이 부적합 통지를 하는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time)은 서로 다른 표준(different standards)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적절한 상황에서 “상업적으로”(commercially)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지의 요건(requirement of notification)이 상업적으로 악의를 배제하는 것(to defeat commercial bad faith)을 의미하고, 선의의 고객의 구제권을 박탈하는 것(to deprive a good faith consumer of a remedy)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⁹³⁾. 한편 합리적인 기간을 CISG 제39(1)의 규정해석과 같이 매수인이 당해 계약목적물을 검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확보한 시기부터 기산하여 실현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고⁹⁴⁾, 우리 상법의 규정처럼 ‘즉시’와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⁹⁵⁾.

4. ‘합리적 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정한 경우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통지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은 특정한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⁹⁶⁾. 판례들은 통지기간(notice period)의 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93) The American Law Institute &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Uniform Commercial Code Official Text and Comments*, West, a Thomson Business, 2004, p. 184.

94) 서경무, 앞의 책, p. 232.

95) 김동석, 앞의 논문, 79.

96) [ITALY Tribunale [District Court] Cuneo 31 January 1996 <<http://cisgw3.law.pace.edu/cases/960131i3.html>>]; CLOUT case No. 310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Düsseldorf 12 March 1993]; CLOUT case No. 81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Düsseldorf 10 February 1994]; CLOUT case No. 378 [ITALY Tribunale [District Court] Vigevano 12 July 2000].

1) 물품의 성질

명백한 부적합을 표시하는 요소들, 즉 뚜렷하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들은 통지기간을 단축시키는 경향이 있다⁹⁷⁾. 물품의 성질(nature)은 자주 언급되는 통지기간 산정의 또 다른 요소이다⁹⁸⁾. 즉 부패 가능성성이 있거나⁹⁹⁾ 혹은 계절적인 물품¹⁰⁰⁾은 더욱 빠른 하자의 통지를 요구 한다. 특히 부패성 물품의 경우, 부적합의 통지는 몇 시간 내 혹은 최소한 몇 일 이내에 행하여 져야만 한다. 그리고 계절적인 상품인 경우, 더욱 신속한 부적합의 통지가 요구된다.¹⁰¹⁾

한편 내구성이 있거나 비계절적인 물품과 관련된 통지는, 더욱 긴 통지기간의 적용을 받는다¹⁰²⁾. 특히 통상적인 경우의 내구성 있는 물품의 통지기간

- 97) [BELGIUM Rechtbank [District Court] Kortrijk 16 December 1996 <<http://cisgw3.law.pace.edu/cases/961216b1.html>>]; CLOUT case No 310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Düsseldorf 12 March 1993]; CLOUT case No. 284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Köln 21 August 1997];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Landshut 5 April 1995 <<http://cisgw3.law.pace.edu/cases/950405g1.html>>];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Berlin 16 September 1992 <<http://cisgw3.law.pace.edu/cases/920916g1.html>>]; [GERMANY Amtsgericht [Lower Court] Riedlingen 21 October 1994 <<http://cisgw3.law.pace.edu/cases/941021g1.html>>]; [ITALY Tribunale [District Court] Cuneo 31 January 1996 <<http://cisgw3.law.pace.edu/cases/960131i3.html>>];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Berlin 30 September 1992 <<http://cisgw3.law.pace.edu/cases/920930g1.html>>]. 하자의 명백성에 대한 고려는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의 문제보다는 통지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언제부터 기간되어지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어야 했던 때가 언제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 98) CLOUT case No. 98 [NETHERLANDS Rechtbank [District Court] Roermond 19 December 1991]; [ITALY Pretura [District Court] Torino 30 January 1997 <<http://cisgw3.law.pace.edu/cases/970130i3.html>>]; CLOUT case No. 378 [ITALY Tribunale [District Court] Vigevano 12 July 2000].
- 99) CLOUT case No. 98 [NETHERLANDS Rechtbank [District Court] Roermond 19 December 1991]; CLOUT case No. 290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Saarbrücken 3 June 1998]; CLOUT case No. 378 [ITALY Tribunale [District Court] Vigevano 12 July 2000]; [NETHERLANDS Arrondissementsrechtbank [District Court] Zwolle 5 March 1997 <<http://cisgw3.law.pace.edu/cases/970305n1.html>>](제38조에 따라 단기간의 물품검사를 명령하는 요소로서 물품의 부폐 가능성이 있는 성질을 언급하고 있다. 바꾸어서 이것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여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 매수인의 통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100) [GERMANY Amtsgericht [Lower Court] Augsburg 29 January 1996 <<http://cisgw3.law.pace.edu/cases/960129g1.html>>].
- 101) Peter Schlechtreim, op.cit., p. 467.

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즉 통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통지기간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불확실하다. 독일 학자들은 극도의 단기간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¹⁰³⁾. CISG에 관한 최초의 독일 및 스위스의 판결 역시 그러한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은 부적합의 통지에 대한 단기간을 규정한 국내법을 가진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⁰⁴⁾. 그 후 몇몇 판결에서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전체적인 기간(물품의 검사 및 부적합 통지기간)을 14일로 발표하였다¹⁰⁵⁾. 그러나 부적합의 발견 후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진 통지를 여전히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진 통지라고 보는 국내법이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러한 견해는 CISG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¹⁰⁶⁾. 만약 프랑스 민법 제1468조에서처럼 2-3년의 기간 내에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승인한다면 프랑스 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¹⁰⁷⁾. 이러한 해석상의 극심한 차이를 방지하려면 서로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약(approximately) 1개월이라는 기간은 대략적인 평균으로 수용되어져야 할 것이다¹⁰⁸⁾. 최근의 독일 및 스위스의 판례들은 이러한 평균에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¹⁰⁹⁾. 독일 연방대법원(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은 이제 규칙적으로(regular) 1개월의 통지기간을 승인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대법원(The French Supreme Court)은 기간의 산정을

102) CLOUT case No. 167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München 8 February 1995]; CLOUT case No. 248 [SWITZERLAND *Bundesgericht* [Supreme Court] 28 October 1998](항소법원은 물품이 신선한 고기보다는 냉동 고기였기 때문에 통지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103) Peter Schlechtriem, op.cit., p. 468; Schlechtriem의 초판을 보면 독일 학자들은 대략 8일의 기간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Peter Schlechtriem, op.cit., 1998, p. 315.).

104) 특별히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105) Peter Schlechtriem, op.cit., p. 468; OGH, 15, October 1998, CISG-online 380; OGH, 27 August 1999, CISG-online 485.

106) 미국의 판례법에 관해서는 White/Summers(2000), §§11-10, p. 554 이하 참조; 영국 SGA(1979) 판례법에 관해서는 Benjamin' Sale of Goods, para 1-016-13-051 참조.

107) Schlechtriem, op.cit., p. 466.

108) 유사한 설명이 OLG Stuttgart RIW 1995, 944; Schlechtriem, op.cit., p. 466, n. 62a.

109) Ingeborg Schwenzer, "THe Noble Month(Articles 38, 39 CISG)", *European Journal of Law Reform*, Vol. VII, no. 3/4, 2006, pp. 353-366.

사실심 재판관의 재량(the discretion of the trial judge)에 맡겨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기간을 수용하고 있다. 물론 몇몇 사건에서는 1개월의 기간도 여전히 장기간이다¹¹⁰⁾.

2) 무역관행 및 관례, 매수인의 물품취급 방법

무역관행(trade usage)^뿐¹¹¹⁾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usage)¹¹²⁾도 역시 통지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도인이 하자에 대한 즉각적인 통지(prompt notice)를 요구하는 최종기간(deadline)을 정해 두고 있음을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최종기간은 통지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¹³⁾.

또한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¹¹⁴⁾를 판단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처리하거나 혹은 여타의 방식으로 물품을 취급하려는 매수인의 계획은¹¹⁵⁾ 통지기간(time for notice)을 더욱 단축할 것이다¹¹⁶⁾.

110) Peter Schlechtreim, op.cit., p. 469. 관련 관례들은 Schlechtreim의 책을 참고할 것.

111) [BELGIUM Rechtbank [District Court] Kortrijk 16 December 1996
 <<http://cisgw3.law.pace.edu/cases/961216b1.html>>]; [NETHERLANDS
 Arrondissementsrechtbank [District Court] Zwolle 5 March 1997
 <<http://cisgw3.law.pace.edu/cases/970305n1.html>>].

112) CLOUD case No 164 [HUNGARY Budapest Arbitration Award case No. Vb
 94131 of 5 December 1995].

113) [GERMANY Landgericht [District Court] Köln 11 November
 1993<<http://cisgw3.law.pace.edu/cases/93111g1.html>>].

114) CLOUD case No. 284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Köln 21
 August 1997].

115) [NETHERLANDS Gerechtshof [Appellate Court] 's-Hertogenbosch 15 December 1997
 <<http://cisgw3.law.pace.edu/cases/971215n1.html>>]; [BELGIUM Rechtbank [District
 Court] Kortrijk 16 December 1996<<http://cisgw3.law.pace.edu/cases/961216b1.html>>];
 [NETHERLANDS Arrondissementsrechtbank [District Court] Zwolle 5 March 1997
 <<http://cisgw3.law.pace.edu/cases/970305n1.html>>](제38조에 따라 단기간 내의 물품검사를 강제하는 요소로서 물품의 처리를 위한 매수인의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였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 매수인의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116) 예를 들어 매수인이 먼저 인도된 물품을 검사하여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인도분과 썩어버림으로써 부적합의 여부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등 매수인이 자신의 물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다.

3) 매수인의 구제권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할 때, 매수인이 적용할 수 있는 구제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¹¹⁷⁾. 만약 매수인이 물품을 보유하면서 단순히 손해배상이나 대금감액만을 청구하기를 원한다면, 기간은 물품을 거절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길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¹¹⁸⁾. 물품을 거절하는 경우에 부적합의 신속한 통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를 통해서 매도인이 지정된 기간 내(within a required period)에 일치하는 물품(conforming goods)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통지는 거절된 물품의 관리(care for) 혹은 재처분(redispose)의 기회를 매도인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물품에 대한 손실 혹은 손상(loss or damage)의 기회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incurring of unnecessary expense)을 낮추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만약 매도인이 고의적으로 계약위반(an intentional breach of contract)을 하였다고 매수인이 주장하거나¹¹⁹⁾ 매수인이 자신의 고객들의 불만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더욱 긴 시간이 허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외국에서 권리의 소추가능성을 확인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간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¹²⁰⁾.

117) Staudinger/Magnus, Art. 39, para 48; UNCITRAL Year Book III(1972), p. 87, No 76; Honnold DOCY HIST, p. 104; Bianca·Bonell, Art. 39, note 2.4; Honnold, op.cit., para 257; 그러나 이러한 구별을 반대하는 견해로는 Enderlein·Maskow, ibid, Art. 39 note 3.

118) Sono, Bianca·Bonell Commentary, p. 309; Enderlein & Maskow는 만약 매수인이 물품을 보유하기(retain)를 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단기간에 통지해야 할 이유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즉 “본 조항의 문구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관점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커지게 되는 불일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다(Enderlein & Maskow Commentary, p. 160.)”

119) ULIS에 관하여 BGH NJW 1982, 2730(고의적으로 불순물이 함유된 물품을 인도한 사건).

120) Resch, ÖJZ 1992, 476.

4) 매수인의 신분 및 전문검사기관의 활용 여부

매수인이 전문가 혹은 전문적인 사람인 경우, 통지기간이 더욱 단축됨을 알 수 있다¹²¹⁾. 또한 만약 독립적인 전문검사기관에 의하여 물품검사가 실행된다면 더욱 신속한 부적합 통지가 요구될 것이다¹²²⁾.

121) [NETHERLANDS Gerechtshof [Appellate Court] Arnhem 17 June 1997
<<http://cisgw3.law.pace.edu/cases/970617n1.html>>]; CLOUD case No. 232
[GERMANY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München 11 March 1998].

122) Peter Schlechtreim, op.cit., p. 467.

IV. 結 論

‘합리적 기간’이란 용어는 매우 주관적이고 유연성이 높은 용어이므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매우 부정확한 용어임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CISG 제39(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무자들은 ‘합리적 기간’이란 용어의 해석에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합리적 기간’을 결정함에는 모든 무역관습(trade usages) 및 당사자 간의 무역관행(practices)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건의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외국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리고 국내학자들도 대체적으로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교수들이 실현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상에 나타난 ‘합리적 기간’은 학자들의 견해처럼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함에는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리적인 기간 내의 통지로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매수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후 1일, 물품이 검사된 후 1일, 인도 후 3일, 매수인이 하자를 인지한 후 7일, 물품이 검사된 후 8일, 물품 인도 후 19일, 물품 검사 후 19-21일, 인도 후 1개월 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독일 및 스위스의 판례들은 대강 1개월이라는 대략적인 평균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합리적 기간’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물품의 성질, 무역의 관습과 관행, 매수인의 물품 취급방법, 매수인의 구제권, 매수인의 신분, 검사기관의 활용여부, 매도인의 치유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상기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종합해보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함에는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략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통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송된 통지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00.
- 고범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대한상사중재원, 1983.
- 김인제·서경무, 「국제거래법요론」, 두남, 2000.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 법무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2005.
- 서경무, 「무역계약론」, 홍익제, 1996,
-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2001.
- 서현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0.
-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2.
- 양영환·오원석, 「최신무역상무론」, 법문사, 2003.
- 오원석·하강현,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2004.
- 이기수·신창섭,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2001.
- 임홍근·이태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삼지원, 1991.
-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2.
- 최홍섭, 「유엔국제매매법」,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7.
- C.M. Bianca & M.J.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E MILAN, 1987.
- Camila Baasch Andersen, "Reasonable Time in Article 39(1) of the CISG – Is Article 39(1) Truly a Uniform Provision?", Pace ed., *Review of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Campbell & Rohwer eds., "The 1980 Vienna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 UCC – Peaceful Coexistence?",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Elsevier; North Holland) 1984.
- Ferrara, "Uniform Application and Interest Rates under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24 *Ga. J. Int'l & Comp. Law* 467.

- Fritz Enderlein & Dietrich Maskow, *International Sale Law*, Oceana Publications, 1992.
- Ingeborg Schwenzer, "THe Noble Month(Articles 38, 39 CISG)", *European Journal of Law Reform*, Vol. VII, no. 3/4, 2006.
-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_____, *Documentary History of the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Deventer/Netherland, Kluwer, 1989.
- Albert H. Ktizer,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4.
- Maur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5 *Syr.J.Int'l L.& Com* 379, 1989.
- Peter Schlechtrei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_____, *Uniform Sales Law: The UN-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Manz, 1986.
- The American Law Institute &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Uniform Commercial Code Official Text and Comments*, West, a Thomson Business, 2004.
- UNCITRAL Year Book III(1972).
- UNCITRAL Year Book IV(1973).
- UNCITRAL Yearbook VIII(1977).
- www.UNCITRAL.org.

ABSTRACT

A Study on Reasonable Time in Article 39(1) of the CISG

Heo, Kwang Uk

As in more than half of the litigated cases, non-conformity of the goods is alleged by the buyer and, hence, the question arises of whether the buyer has given notice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is thus allowed to rely on the lack of conformity at all, differences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reasonable time" in Article 39(1) CISG endanger uniformity of international sales law in a core area.

This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reasonable time" in Article 39(1) CISG can, however, not be achieved by merely making recommendations to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that case law from other CISG jurisdictions should be considered. This can at best lead to confusing results.

As you know, the determining of reasonable time i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concerned with the particular case. So the term 'reasonable time' has proven too imprecise due to its flexibility without defined uniform scale to assist the practitioners in a uniform application of Art. 39(1). Therefore I sugges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determining of the reasonable time.

The factors currently influencing whether an Art. 39(1) notice is given within reasonable time in international practice are: any international trade usage and practices, the nature of the remedy chosen by buyer, the nature of the goods delivered and the mode of dealing with the goods.

Key Words : reasonable time, notice of non-conformity